

#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남창진 의원 발의)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2732 |
|----------|------|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5월 26일

발 의 자: 남창진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고광민, 김동욱,  
김영철, 김용호, 김원중,  
김원태, 김재진, 김춘곤,  
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  
남궁역, 문성호, 박강산,  
박춘선, 신동원, 윤기섭,  
윤종복, 이봉준, 이상욱,  
이종태, 이종환, 임춘대,  
정준호, 최민규, 홍국표,  
황철규 의원(28명)

## 1. 제안이유

- 서울시교육청에서 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, 심의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의 전문성 · 민주성 · 투명성 · 공정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,
- 회의의 운영 시 위원의 제척 · 기피 · 회피에 대한 근거와 서울시의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중 관련 공무원들이 위원회 회의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위원회가 전문성 · 민주성 · 투명성 ·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기본원칙을 규정함.(안 제3조).
- 나. 위원회 운영 시 위원의 제척 · 기피 · 회피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.(안 제10조).
- 다. 서울시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중에는 관련 공무원이 참석하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도록 함.(안 제11조)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

##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제3조의2로 하고,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(기본원칙)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조정·협의·심의·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의 전문성·민주성·투명성·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”을 “교육감”으로 한다.

제11조를 삭제하고, 제10조를 제11조로 하며,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

경우

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라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11조(중전의 제10조)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49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는 위원회의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중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정한 심의·의결 기한 등으로 회의 개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④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·의결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.

⑤ 위원회 위원의 대리 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<br>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<br>정<br>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<u>제3조(기본원칙)</u>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조정·협의·심의·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의 전문성·민주성·투명성·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.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p><u>제3조 (생 략)</u></p> <p><u>제7조(위원회의 구성)</u> ① 위원을 위촉할 때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<u>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</u>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.</p> <p>1. ~ 4. (생 략)</p> <p>② ~ ⑥ (생 략)</p> | <p><u>제3조의2 (현행 제3조와 같음)</u></p> <p><u>제7조(위원회의 구성)</u>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 <u>교육감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<u>제10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</u></p> <p><u>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</u>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
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
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라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10조(회의의 운영) ①·② (생략)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제11조(대리참석) 위원회 위원의 대리 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.

제11조(회의의 운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49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는 위원회의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중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정한 심의·의결기한 등으로 회의 개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④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·의결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.

⑤ 위원회 위원의 대리 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.

<삭 제>

#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### 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, 심의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의 전문성·민주성·투명성·공정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, 회의의 운영 시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대한 근거와 서울시의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중 관련 공무원들이 위원회 회의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한 것 등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### 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   재정분석담당관

담    당    관      주    병    준

추계세제팀장      김    중    헌

추 계 분 석 관      김    진    형

☎ 02-2180-7954

e-mail : kjh0816@seoul.go.kr

**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**